

<b>회의명</b>	2024년 제4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b>회의 개최기관</b>	건설국 하천과
<b>일시 및 장소</b>	2024년 12월 11일(수) 14:00~16:11 경기도청 북부청 상황실(2층)
<b>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b>	□□□, ○○○, ◇◇◇, □□□, ○○○, ◇◇◇, □□□, ○○○, ◇◇◇, □□□, ○○○, ◇◇◇, □□□
<b>회의 진행순서</b>	1. 회의진행안내 2. 개회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b>상정안건</b>	1.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 2. 한강 지류(항금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 3.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4.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5. 흑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
<b>발언내용</b>	별첨(속기)
<b>결정사항 및 표결내용</b>	○ 결정사항 - 1안건 조건부 결정 - 2안건 조건부 결정 - 3안건 원안 결정 - 4안건 조건부 결정 - 5안건 원안 결정
<b>비 고</b>	

---

# 2024년 제4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속기록

---

경기도청

# 속 기 록

.....  
【 개회 14:00 】

## □ 사회자

- 오늘 개최되는 2024년 제4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4조에 따라 회의 내용은 속기로 작성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회의 진행순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 기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성원 보고,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으며 인사말씀 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제3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한강권역,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2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안건인 북한강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 등 5건에 대하여 열다섯분의 위원께서 심의하였으며, 북한강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 등 2건은 조건부 의결하였고 수입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등 3건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다음은 성원 보고입니다.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총 스물다섯 명의 위원 중 열세 분이 참석하시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24년 제4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개회가 있겠습니다.

## □ 부위원장

- 그러면 2024년 제4회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안건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 두 번째, 한강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 세 번째,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네 번째,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다섯 번째, 흑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의사봉 3타 >

-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에 대하여 ○○○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 입장 )

## 제1안 :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

【 14:04 】

### □ 사회자

-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하천의 개황을 재조사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8년부터 과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 금당천 등 2개 하천은 경기도 여주시 및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인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제1지류 하천으로 유역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제1안건설명자A

- 지금부터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 개요입니다. 금회 과업 범위는 금당천, 곡수천 2개 지방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당천, 곡수천 양평~여주 일원에 위치한 하천으로 금당천은 하천연장 20.35km, 곡수천은 12.4km가 되겠습니다.
- 과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8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전문가 자문을 3차에 걸쳐서 받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서 금회 수자원관리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심의의견을 최종 반영해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입니다. 금회 하천의 유역현황입니다. 형상계수는 약 0.18~0.22, 평균고도는 112~160m, 평균경사는 약 11~15% 내외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농경지 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토양 특성은 배수가 매우 양호한 A타입이 대부분이고, 토지이용현황은 임야와 논밭이 전체 유역면적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는 농경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천환경 특성입니다. 하천 수질은 BOD, DO 기준 모두 그 공히 좋음 형태로 나타내고 있고, 범정보호종은 수달, 원앙, 삿,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독수리 등 6종의 범정보호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홍수량 산정입니다. 금회 홍수량은 홍수량 산정 표준 지침, 201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홍수량 산정 표준 지침에 준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기 수립 홍수량에 비해서 지역빈도 해석, GEV분포를 결정하였고, 수정 Huff 3분위 그리고 한국형 도달시간 저류상수 경험공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역면적은 금당, 곡수천 공히 100km<sup>2</sup> 이하로 하도추적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강우분석 방법입니다. 금회 기 수립은 기상청 양평관측소 외에 환경부 4개 관측소 총 5개소를 적용한 반면, 금회 지역빈도해석에서는 기상청 양평관측소 외 환경부 5개 관측소,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환경부 3개 관측소가 추가되어 강우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빈도해석, GEV분포를 적용을 했고, 강우강도식은 전대수 다항식, 강우시간분포는 수정 Huff 3분위를 적용하였습니다.
- 강우관측소는 앞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유효우량 산정 방법입니다. NRCS 방법을 채택해서 유출곡선지수를 산정하였고 산림의 CN 기준 변경과 토양군 분류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다소 CN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 홍수량 산정 결과입니다. 홍수량에서 금당천은 하구 기준 약 17% 정도가 감소하였고 곡수천은 약 5%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확률강우량의

변화와 홍수량 산정 방법 변화에 따른 Huff 분포, 도달시간, 저류상수 변경이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가장 큰 기 수립과 증감 원인은 하도 측 여부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 수립 현재 홍수량을 검토할 수 있는 수위관측소가 실제 유역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강우를 이용한 홍수량 분석에 따른 매개변수분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기 수립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그리고 하도추적방법을 공히 금회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해서 비교분석해서 홍수량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계획빈도는 하천의 규모 및 중요도 그리고 치수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산지, 농경지 비중에 따라서 전형적인 농경지 하천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빈도였던 50년 빈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곡수천 종점은 여주저류지와 인근한 지역으로는 한강의 배수영향구간을 고려해서 100년 빈도로 결정하였습니다.
- 빈도별 기점홍수위 결정방안입니다. 금회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한강 하천기본계획의 빈도별 수위를 기점홍수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계획홍수위 산정 결과 금당천 합류부의 한강 기점수위가 일부 감소했고, 곡수천의 경우에는 일부 증가한 기점의 영향에 따라서 금당천 하구 쪽은 일부 감소, 곡수천은 일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금당천의 중상류는 홍수량 저감 효과와 하상부의 쇠퇴에 따라서 일부 증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곡수천은 홍수량 증가가 계획홍수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홍수량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서 실제로 금회 홍수위가 기 수립 계획홍수위보다 줄어드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의 일관성이나 치수안전성을 고려해서 기 수립 홍수위를 금회 계획홍수위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 하천시설물 계획입니다.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금당천은 축제 5개소 약 2.7km, 보축 5개소 약 1km, 곡수천은 축제 3개소 약 2.5km, 보축 9개소 약 7.5km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금당천 축제1지구 상황입니다. 금당천 축제1지구는 농경지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용 도로가 단절되어 있고 현재 하도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구간으로써 하천에 확폭, 축제 계획을 수립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 축제2지구입니다. 축제2지구는 하천 선형 및 제내지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좌안 측으로 확폭 계획을 수립하였고, 유지관리용 도로가 미설치돼서 하천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여유고 부족에 대한 확폭 계획 및 독마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축제3지구입니다. 축제3지구는 하천 선형 및 제내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서 우안 측으로 확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안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도의 통수능이 부족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 축제4·5지구입니다. 축제4·5지구는 금당천 최상류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폭이 좁아서 하도 통수능이 부족한 구간으로 양안 축제 계획을 수립해서 확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사유지 편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단면의 형상을 고려해서 제외지 사면을 1 대 0.5 사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보축지구는 금회 제방의 형태는 띠고 있으나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곡수천 1·2지구입니다. 곡수천의 제내지는 농경지로 되어 있고 하도의 일부 하천 하상 바닥에 퇴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통수능이 부족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마루 폭이 기준보다 협소해서 양안 확폭 계획을 수립했고 하상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했습니다.
- 축제3지구입니다. 축제3지구는 곡수천 상류 구간으로써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 수립 당시에 양안 확폭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금회 하천 선형을 고려해서 우안 쪽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용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마루를 4m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내지의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외지 사면

경사를 1 대 1.5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곡수천 보축지구도 마찬가지로 금회 제방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이거나 편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에 보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하천의 환경목표입니다. 금회 하천종점 기준으로 전 구간 Ib(좋은) 등급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중권역 목표 기준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설정했고 현재 수질 현황은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하천 공간관리계획입니다. 이수, 치수, 생태 그리고 현재 친수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친수와 복원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당천은 마을과 인접해서 현재 하천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일부 고수부지에 친수활동을 하고 있는 구간 약 500m 정도를 친수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곡수천은 한강 합류점에 위치한 여주저류지 및 양촌지구와 연계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친수지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하천시설관리대상입니다. 하천구역 설정은 「하천법」 제10조,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2조, 폐천부지는 「하천법」 제84조에 의거해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폐천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하천구역은 금회 금당천 약 887필지에 약 200만㎡, 곡수천은 718필지에 약 120만㎡를 하천구역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천구역 결정 시에 기 수립의 지적이 어긋나는 구간이나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는 구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하천구역을 재결정하였습니다.
- 홍수관리구역은 금당천은 금회 설정하지 않았고 곡수천은 최상류 구간 일부 농경지 지역 13필지 4,500㎡를 홍수관리구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폐천부지는 금당천 61필지 5만4,000㎡에 대해서 폐천부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구간 보전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전검토의견으로 24건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보

고서를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간단하게 기본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 ○○○

- 제가 사전의견을 안 드려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이게 그냥 수립주기가 도래했다고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수립주기로부터 현재까지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현안이 정리되어야지 이 과업에서 어디에 집중할지, 과업 수립과정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 저희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하천관리상의 현안이 정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수가 됐든 유지유량이 됐건 생태, 수생태 쪽이 됐건 이 하천에서의 어떤 부분이 현안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 그다음에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인데 대부분 여전히 홍수유량 산정방법 비교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금당천 같은 경우에 하구 기준으로 17%가 감소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트렌드에 따라서 원래의 홍수위를 그대로 고시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개정된 표준 지침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가 감소를 했더라도 기존에 산정요령 대비 표준 지침의 어떤 부분 때문에 1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 ○○○

-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

가 그러지 못했었어서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서 하천기본계획에 하천환경이나 수질 부분이 대부분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고서의 내용에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수질 예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할 때 그 수질 모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수록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쪽에 하천환경 특성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장래 인구 예측 결과나 장래 생활계 배출부하량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출처조차도 기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표도 없는 내용을 보고서 내용에 수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 □ ○○○

○ 위원님들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안 했고, 그런데 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 □ 제1안건설명자A

○ 저희가 금당천하고 곡수천을 지배하는 우량관측소는 아까 우량관측소 선정기준에서 말씀드린 그 우량관측소가 맞는데요. 저희가 환경부 관측소는 결측년도가 일부 있고 그리고 연도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양평관측소를 사용해서 수자원 부존량을 결정은 했습니다. 다만, 의견 주신 대로 기존에는 지배우량에 대해 티센을 적용해서 수자원 부존량을 재검토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가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그 얘기는 지금 수자원 부존량 산정할 때는 그냥 양평관측소 하나만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제1안전설명자A

○ 예, 현재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 ○○○○

○ 그런데 지금 거의 같은 유역에 있는, 이 다음 안전 같은 경우에 항금천 16개 도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유역들인데 거기는 각 하천별로 수자원 부존량의 강수량 값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홍수 시하고 갈수 시의 비율, 구성비도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같은 유역인데 어느 쪽은 가능해서 다 분리해서 해 놨는데 이쪽은 무시하고 하나로만 해서 통일해서 똑같이, 11쪽 그림 PPT 한번 보여주세요. 11쪽에 티센망을 보면 두 하천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것을 하나로 같이 했고 그다음에 구성비도 똑같은 것으로 전부 제시를 해서 너무 성의 없이 한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비교검토해서 보고서에 수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1안전설명자A

○ 이것은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수록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항금천 같은 경우에 자료를 같이 받아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환경부 관측소들을 다 적용했는데 실제로 10개년 미만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관측소 일단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그러세요. 같은 이천시 유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용역사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바로 붙어 있는 하천들이고 하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안전설명자A

○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 ○○○

○ 기존에 드렸던 의견 외에 지금 발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목표수질이 수질 현황보다 낮아서 사실 우리가 목표수질을 그렇게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기억에 보고서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목표수질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현행 유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제1안건설명자A

○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위원님.

□ ○○○

○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홍수량을 산정할 때 유역면적에 대해서 기 수립이 예를 들면 금당천 종점이 920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금회는 762톤으로 해서 약 17% 감소됐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어요.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있어요, 강우량에. 그것보다 지금 비교해서 계산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어떠한 홍수량이 나타났는지.

□ 제1안건설명자A

○ 증감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

○ 예.

□ 제1안건설명자A

○ 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도달시간하고 저류상수 그리고 기 수립하고 비교했을 때는 하도추적 적용유무가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고 기존에 금당천 같은 경우에는 도달시간과 저류상수가 굉장히 작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

도추적을 함에 있어서 약간 평행한 유역처럼 긴 유역이다 보니까 소유역으로 쪼개면서 하도추적 실시할 때 각 소유역에서의 도달시간이 워낙 짧게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 수립의 홍수량이 약간 크게 나와 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

- 그러면 통계자료보다는 지금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잡으면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 제1안건설명자A

- 그러니까 비 유량상으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 기 수립에서...

□ ○○○○

- 그게 확률적으로 20년 확률, 아니면 50년 확률 그게 다 비교해서 그렇게 지금 보고서 작성한 겁니까?

□ 제1안건설명자A

- 확률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 ○○○○

- 강우량이 매년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연도를 보통 평상시 비 오는 것하고 20년에 폭우가 오는 것하고 그와 같은 대비를 한다면 비상시에 50년 확률 대비해서 그와 같은 결과도 여기에 지금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건지.

□ 제1안건설명자A

- 예, 맞습니다. 계획빈도는 50년 빈도로 계획했고 다만, 홍수량이 산정방법의 변화에 의해서 홍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발생해서 계획수위 자체가 낮아지면 치수안전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수립에 관리가 되고 있는 수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질의하실 분? ○○○

□ ○○○

○ 이게 지금 2019년도에서 해서 5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제1안건설명자A

○ '18년도에.

□ ○○○

○ 2018년부터. 그런데 만약에 홍수량 산정이라든지 강우가 강우로부터 해서 홍수량 산정에 변동이 생기면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계획홍수량이 만약에 변동되면 지금 보축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게 다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 제1안건설명자A

○ 계획홍수량이 변동되면 그에 맞게 계획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 ○○○

○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홍수량을 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제1안건설명자A

○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자분은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 퇴장 )

○ 심의 방향은 ○○○이 말씀하신 하천관리현황 정리랑 홍수산정 시 필요한 표

준 지침의 17% 감소 요인 분석,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수질 결과의 적정성이라든지 하천환경 특성조사 출처 등 기재하는 사항들, 그리고 ○○○ 위원님 말씀하신 수자원 부족량, ○○○님 말씀하신 목표수질량 검토 등 그리고 장석환 위원님의 홍수량 적정성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지요?

□ ○○○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이 보고서가 사실은 홍수량이 빈도는 똑같은데도 확률 강우량 증감패턴이 다양한데 그냥 이유, 근거 대지 않고 기 수립으로 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설명을 대충 해 온 거죠. “~하겠음” 한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그냥 보완하는 정도로 해도 될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부위원장

- 재수립하고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조건으로 가는 건 어떤가요?

□ ○○○

-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아까 얘기를 아무 것도 안 한 이유가 이 조치결과 자체가 성의 있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냥 뭐는 안 되는데 겨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 것도 보·낙차공에 대한 것도 “정량적으로 재검토해서 쓰세요” 그러면 보통 회사들은 정량검토해서 다 보완자료를 냈거든요. 여기는 그냥 “하겠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급하신 게 아니라면 모든 홍수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료가 부실한 측면이 있으니.

□ 부위원장

- ○○○, 이것 일정이 어떻게 되죠?

□ 사회자

- 이것은 한강청에서 2018년도부터 수립해서 거의 6년 만에 올라온 안건인데요.

□ 부위원장

- 그러면 조치계획 부분에 대해서 “하겠음” 그런 것보다...

□ 사회자

- 조치계획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위원님들께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 부위원장

- 조치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 사회자

- 예.

□ ○○○

- 도에서 나름대로 홍수량이랑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하시고, 한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각자 개인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 사회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수량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설제방들을 고려해서 홍수량 줄은 것만큼 홍수위를 낮추면 더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차라리 유지하는 게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상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

-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에 적정하게 제안해서 가지고 와야 저희도 심의할 것 아니에요.

□ 사회자

- 예, 그 내용을 하라고 그러고 저희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조치계획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예.

□○○○

○ 그렇게 6년씩 오래 이 과업이 진행된 이유는 뭐예요?

□ **사회자**

○ 사실은 6년 한 것은 되게 감사한 상황인데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현재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인데 과거에는 10년 이상씩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5~6년이 된 건데 그래서 항상 조사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또 심의를 보류하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들도 알면서도 조금씩 양해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그것도 그렇고 2019년도에 홍수량 산정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적용을 하니깐 2021년부터나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사회자**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장석환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다 흔들기 시작하면 아마 이 과업은 10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 그런데 지금 이 금당천, 곡수천하고 이 다음에 심의할 향금천 16개 등은 같은 유역에 붙어 있는 하천들이잖아요. 같은 유역에 붙어 있는 하천들이는데 완전히 결과가 달리 나오는 인근 하천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금당천, 곡수천 경우에는 부실하게 작업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할 향금천 등 16개 한 것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도록 경기도에서 이번 건은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그 부분 미처 부족하게 챙긴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다 조건부로 걸어서 조건부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 관계자분 입장시켜 주십시오.

( 관계자 입장 )

- 금당천 등 2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관계자 퇴장 )

( 관계자 입장 )

- 두 번째 안건 한강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안 : 한강 지류(항금천 등 16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

【 14:37 】

### □ 사회자

- 한강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하천의 개황을 재조사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항금천 등 16개 하천은 총 65.4km로 여주시, 광주 시 및 양평군 3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인 한강으로 합류하는 제 1, 2지류 하천으로 유역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농경지 및 산지입니다.
- 자세한 설명은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주)다산컨설팅 강필식 전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 제2안건설명자A

- 방금 소개받은 ○○○입니다. 지금부터 한강 지류 항금천 등 16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업 개요, 기본계획(안),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회 과업의 목적은 한강지류 16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변경 필요구간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 사업지구 위치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에 대한 제1지류들이 대부분이 고요. 다만, 좀 떨어져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곡수천, 금당천 등 동일한 지방 하천입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용역을 통해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금회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금회 과업은 발주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2차에 걸친 자문, 그리고

이수협이 등등을 거쳐서 오늘 심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 하천의 일반현황으로 기점과 종점을 나타내었습니다.
- 한강 지류 16개 하천에 대한 수계 모식도입니다.
- 다음은 일반적인 하천현황이고요. 항금천, 영동천, 가정천, 계림천 등 이 하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요약을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별 표고현황입니다. 그 표고현황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홍수량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한 것들 중에 하나가 유역 내에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제 개발이 진행되는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 금회 하천기본계획 홍수량 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문학적 토양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개략토양도와 달리 금회 기본 계획에서는 정밀토양도를 사용하여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 하천의 환경현황입니다. 16개 하천, 총 41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측정된 결과 매우 좋음~약간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구요.
- 수질현황 및 저질현황에 대한 결과입니다.
- 하천환경 동식물상에 관련해서는 2차에 걸친 조사와 동계 조사를 거쳤으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저희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관측소 현황입니다. 저희 유역 내 군집에 따라서 총 8개 관측소가 있었구요. 이것에 대한 지역빈도해석을 통해서 금회 기초자료가 되는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다음은 홍수량 산정지점도입니다. 기 수립과 연계하여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였고요. 다만, 지점과 지점 사이에 차이가 많이 크게 떨어져 있어서 홍수량의 변화가 크다든지 또는 시·종점부가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회 추가한 지점도 같이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홍수량 산정 방법입니다. 기 수립이 2010년도 초반에 다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당시 기 수립 때하고 금회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시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확률강우량 산정함에 있어서 과거 지점빈도해석을 금회 지역빈도해석으로 정하였던 부분, 그리고 강우의 시간분포를 그때 당시는 최빈 분위인 2분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금회는 표준 지침에 따라서 3분위를 적용을 하였고, 홍수량 산정에 또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과 달리 지침에 적용된 공식들을 준수하여 적용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기 수립 때는 산정지점별로 하도추적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을 하였으나 금회에는 면적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회에서는 하도추적방법은 제외하고 단일유역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다음은 설계빈도 결정입니다. 저희가 금회 설계빈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에 기 수립에 대한 빈도도 당연히 참고를 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강우발생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유역 내에 실제로 홍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 주변 하천유역의 실제 적용 빈도 여부, 토지이용현황 그런 개발 상황들을 현장조사를 통하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금회 빈도에서는 큰 수해 피해가 났었던 용담천, 주어진, 세월천에 대해서는 빈도를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대규모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가정천하고 항금천에 위치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조사할 때는 펜션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타운하우스 개념처럼 지속적으로 산지부나 이런 부분에 개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회 고려를 해서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하는 데 반영을 하였습니다.

- 그에 따른 홍수량 산정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기 수립과 금회는 방법론에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감사유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서면으로 사전검토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자료는 별첨자료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실제 홍수량의 중요한 인자인 강우량 그리고 도달시간, 저류상수, 유출곡선지수 그리고 강우분포의 분위 이런 부분들을 표현상으로 민감도 분석식으로 해서 과연 이 하천에 어떤 인자가 가장 홍수량 증가나 감소의 요인이었는지를 검토해서 크게 산정되었던 상호천, 소유천 그리고 감소하였던 일신천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점홍수위 결정은 우선 기 수립 때 있었던 수위 검토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한강 지류다 보니 본류 한강에 대한 기점홍수위를 파악해서 저희 지점 합류점 부분에 있는 기점홍수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류 자체의 홍수위, 등류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강 지류들이 포함되는 구간들의 홍수량 자체들이 1만7,000m<sup>3</sup>/s 정도 되는데 합류되는 지방하천들은 그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류에 계획홍수위를 적용해서 기점홍수위와 계획홍수위 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수영향구간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한강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수영향구간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수위 영향을 받는 부분까지가 아니라 실제로 제방에 영향이 가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은 하천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수영향구간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관리청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점수위나 여러 가지 개수계획을 통해서 14개소 하천에 대해서 축제, 보축 그리고 고수호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이런 축제나 또 교량 같은 보나 낙차공 등의 시설물에 대한 능력검토 결과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물계획을 추가하여서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이구간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16개 하천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하천마다 특색은 다 있습니다만 이 배수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부분

들이 있어서 빈도의 변화가 있는 부분, 배수영향이 있는 부분 그리고 배수제방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또 하구부에 수문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유역분담(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천변저류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저수지가 홍수조절능력이 있는지 등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16개 하천 중에서 특이사항이 없거나 특히 병목구간 같은 게 있는 부분들 구분을 해서 금회 특이구간 검토에서는 가정천 그리고 금사천, 향리천, 용담천 이 4개 하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수영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역분담(안)에 대한 부분 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 첫 번째 가정천입니다. 가정천은 양평군에 있는 두물머리 근처에 있는 하천이 고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기 수립부터 있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은 현재 배수제방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류부에 수문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류에 영향을 받는 수위를 고려해서 배수제방을 그대로 설치할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제방이 높이가 높아지고요. 또 여유고도 본류 수위를 따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여유고 2m, 독마루 7m의 대규모 제방이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집 앞까지 설치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안, 2안, 3안, 4안을 배수제방, 반배수제방 그리고 자기류제방 또는 제방 없이 홍수관리구역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을 제안해서 최종적으로는 제방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타 하천들에 대비해서 수문 설치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금회에는 2안 반배수제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금사천입니다. 금사천 좌안 측에 보시면 축계계획이 저희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 중간 부분에 병목구간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 때도 나왔었던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상류부에 위치한 금사저수지가 과연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 효과를 발휘를 하거나 해서 그런 병목구간에 대한 해소에 유역분담(안)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사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였고요. 그래서 실제 금사저수지는 수문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홍수 조절은 어렵다고 보았어요. 자체적인 홍수 지체 효과라든지 저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용량으로는 실제 병목구간 해소를 하기 위해 유역분담(안)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축제 확폭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향리천입니다. 향리천의 경우는 양평군의 개군면사무소 소재지의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현재 병목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하류부는 이미 배수제방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 상류 쪽은 2017년도 경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병목구간만큼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금회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바로 직상류의 천변저류지를 검토를 하거나 최상류부에 있는 향리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바로 위에 있는 천변저류지는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천변저류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병목구간에 대한 여유고 확보라든지 통수능 확보에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고 더 큰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확정이 돼서 실제로는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기수립과 동일하게 병목구간은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은 용담천 구간입니다. 좌안에 있는 개수계획상으로 보면 축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있는 부분인데 왼쪽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기수립 때 홍수관리구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농경지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선형을 틀거나 확폭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홍수관리구역으로 해서 가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들 사유지에 일부분은 성토를 하고 해서 펜션, 주거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계획할 때는 좌안 측에 하천구역이 여유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홍수관리구역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축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월류 방지를 해 주고 일부 구간 돌리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이와 동시에 병목구간에 대해서도 상류 측에 천변저류지에 놓는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 병목구간하고 실제 확폭에 필요한 구간하고 겹의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천변저류지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회 계획에서는 축제계획을 통해서 통수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공간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친수, 복원, 보전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회 저희가 하천구역하고 홍수관리구역 변경은 저희가 하천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한 개념보다는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생기는 변경이 필요한 구간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을 구분했고요. 금회 계획에 축제, 보축계획 등에 따라서 확폭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따른 변경 그리고 기 수립 이후 금회 전에 또 다른 하천공사에 대한 부분 또는 도로공사, 택지개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 또는 지형 변화라든지 지적 분할이라든지 또는 병합이라든지 연속지적도가 그 이후로 좌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틀어진 부분이 맞춰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주민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었고 하천의 시·종점부에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되 이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국유지나 사유지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어차피 하천구역 활용을 하거나 장래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유지의 경우는 과대하게 과거에 단순히 천부지라든지 기존 구하도라든지 이 주변에 있었던 것을 너무 과대하거나 무리하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을 결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다음 표 내용들은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구간, 구간들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낸 위치입니다.
- 그래서 하천구역 변경에 대한 예시는 지금 보시는 그림 두 가지로 우선 예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금회 계획을 수립하면서 홍수량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해서 축제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확폭이 되기 전에는 아래 하천구역이라고 그냥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까지만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확폭이나 통수능 확보를 위해서 축제계획이 있는 부분은 결국 제방부지 있는 부분까지는 하천구역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구역 변경을 필요 구간으로 뽑아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기존 하천구역에서 넓어지는 부분들만 딱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천구역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 외에 하천구역을 축소하거나 폐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천구역과 함께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홍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계획홍수위 이하의 토지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한 그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조건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수립 때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홍수관리구역 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사진을 보시면 녹색으로 기 수립 지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수립 때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토지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금회 측량 성과를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계획홍수위보다 지대가 다 이미 높아져서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정 요건에 계획홍수위 이하의 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수관리구역 유지하는 것은 또 민원이나 이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 결과에 따라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토지가 다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홍수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 다음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토지가 있어서 홍수관리구역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저희는 하류부터 확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홍수관리구역이 있는 부분까지 제방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홍수관리구역 앞쪽까지 제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축제계획이 있을 경우라면 축제계획이 우선이고 홍수관리구역 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사의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홍수관리구역을 바로 제외한다는 것은 향후 또 다른 문제들이나 치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관리구역 일부는 하천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홍수관리구역은 보고서에 명기를 하였습니다만 하천공사가 시행돼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금회 계획에서는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은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19건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홍수관리구역 변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홍수관리구역에 축제 계획이 있다고 바로 빼는 부분이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축제계획에 따른 그 부분은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홍수관리구역 일부 면적이 빠집니다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래 하상 예측결과 큰 지점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하천관리방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표시를 해서 우선 자료를 드렸었고요.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상변동을 하다 보면 세굴이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 퇴적이 우위가 있는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하천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답변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선 샘플 예시입니다. 모든 하천을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세굴 우위구간이 있는 부분 실제로 50cm 이상이라든지 구역 옆이나 세굴이 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구간으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하상보호공을 할 수 있는 사석 붙이기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 또 하상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토는 실시설계 때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상보호공의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은 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계획홍수량 변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수량 변동의 가장 큰 것은 2012년과 2019년 지침의 변화도 가장 컸습니다만 이 부분을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 인자 중에 강우량의 변화만 확률강우량만 변화시켰을 때, 도달시간만 변화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인자별로 구분을 해서 실제 보고서 내에서는...

#### □ 부위원장

-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치계획은 위원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2안건설명자A

○ 예, 그러면 자료는 드린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26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현황이 수질현황하고 저질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수질이 좋으면 하천의 저질도 좋은 게 기본 아닌가요? 가장 일반적인 게 수질이 좋은 하천의 저질도 양호하죠. 그렇죠?

□ 제2안건설명자A

○ 예.

□ ○○○

○ 저질이 나쁜데 수질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수질은 좋아요. 그런데 저질은 대부분 나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43쪽, 지금 3개 (안)이 있는데 1안을 채택했는데 가장 쉬운 (안)은 뭐예요, 저기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 제2안건설명자A

○ 저는 좀 복잡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유역분담(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그 (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하류의 하폭이나 연속성 때문에 1안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 우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치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3안 아니에요? 저수지, 예를 들어 이 사이 기존 여수로에다가 가동보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요. 최근에 하는 대로 수문도 설치하지만 기존 고정정보로 된 여수로에다가, 월류부에다가 가동보를 지금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한다

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 공급인데 지금 몽리면적, 전국에 있는 모든 저수지에 몽리면적 늘어나는 저수지는 없어요. 지금 다 몽리면적이 도시화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몽리면적보다 늘어나는 저수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최대한 치수, 이수 우리가 지난 여름에 기후대응댐 같은 것 14개, 또 거기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저수지 증고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제가 지난달에 농어촌공사 평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동보를 1.5m 여수로에 설치해 봤어요. 그 1.5m 높였다 봤다 해서 홍수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한번 가서 타진해 봤어요?

## □ 제2안건설명자A

- 저희가 검토했었던 부분은 증고사업 개념으로 타진한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데서 제한수위를 뒤서 홍수량 저감에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문의했었습니다만 실제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본인들은 차질이 생기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제한수위를 확 뒤서 미리 방류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선은 실질적으로 증고사업 개념보다는 제한수위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적인 저감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 ○○○

-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보축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저 의견을 제시해 봤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

## □ ○○○

-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요. 홍수량이 작게 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신천 같은 경우에도 홍수량이 상당히 작는데 그것에 따른 계획 홍수위의 변동을 작게 조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 제2안건설명자A

- 홍수량은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침에 따른 것 그대로 적용은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홍수량이 작아져서 제방이 필요 없는 것을 걷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부분도 배수영향 받는 구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본류 영향을 받고요. 상류 측에서도 저희가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축제계획을 넣었지, 기존에 완성제방 형태로 잘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른 계획을 주거나 딱 폭에 맞게 가는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 ○○○

-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서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술을 부탁드립니다.

□ 제2안건설명자A

- 예,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보고서에 넣고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

□ ○○○

- 저는 앞에 홍수량은 설명자료 보완해 달라고 한 것은 하셨는데 보하고 낙차공에 대한 설명은 예시로만 드신 거죠?

□ 제2안건설명자A

- 예, 모든 하천을 다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험해서 했었고. 예시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한 예로 말씀을...

□ ○○○

- 다른 것도 검토해서 자료는 제시하실 거죠?

□ 제2안건설명자A

- 예, 맞습니다.

□ ○○○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업 쪽이 많은 하천이라서. 그런데 철거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어요. 필요 없는 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이에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제2안건설명자A

- 예,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 ○○○

- 왜냐하면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서.

□ 제2안건설명자A

- 예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는 다른 하천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샘플로만, 너무 자료가 두꺼워지는 것 때문에 예시로만 넣었고요. 나머지 하천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은...

□ ○○○

- 해서 조치계획에 추가하실 거죠?

□ 제2안건설명자A

- 예, 맞습니다.

□ ○○○

-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여기 하천구역을 제외하거나 홍수관리구역에서 제외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자료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줄을 그냥 통째 줄을 붙이셨잖아요. 제외 필요한 게 다 이 이유인지 아니면 그 해당, 해당 구간에 대해서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를 본문에도 상세히 하셔야 되고 내용에도 줄을 정확하게 달아 주셔야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지금 본인만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끝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제시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제2안전설명자A

○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 ○○○

○ 과거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이 너무 치수 쪽에 치우쳐 있고 나머지 이수라든지 유지유량이라든지 수생태 이런 쪽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보고서를 보면 그런 게 다른 이수라든지 수생태, 유지유량 이런 쪽도 분석이 상당히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계획이 또 너무 치수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시설계획을 별도로 여기서 설치하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치수 관련 시설 물도 뭔가 다목적이나 다기능적인 시설로 계획할 수 있었지 않나. 예를 들면 생태저류지라든지 또 하도설계도 가변형으로 해서 생태를 같이 고려한다든지 또는 생태공원, 인공습지, 또 복합가동보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기존에 생각했던 치수시설로 여전히 치우쳐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계자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 퇴장 )

○ 이번 안전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 보이니까 김이현 위원님과 ○○○, ○○○, ○○○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완하거나 검토하는 조건으로.

□ ○○○

○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원래 하천기본계획에서 저수지 구간이 아무리 있어도 저수지하고 연동해서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지는 않아 왔잖아요. 그런데 김이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검토를 지금 수준, 이 사람들이 한 수준이 아니고 저수지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 사회자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은 모든 저수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저수지도 저희가 검토를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활용하든 안 하든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조건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 ○○○

- 그것은 검토를 기존의 관행대로 검토를 한 것이고 여기 보면 다 제한수위를 바꿀 수 있거나 아주 소극적인 차원에서 저수지를 하천의 홍수계획에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증고를 할 거냐, 아예 저수지 자체를 바꾸는 계획을 포함한 계획까지 검토는 안 했다는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 사회자

- 그 부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증고까지는. 제한수위까지는 저희가...

□ ○○○

- 제가 여쭙보는 건 그거예요. 이 의견은 그것을 포함해서 증고하는 다목적 저수지 이용을 포함한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할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넣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 사회자

-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활용...

□ ○○○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그동안에 저수지 증고 문제라든지 다목적화하는 것은 사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약간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역계획, 종합계획이라든지 권역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여기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 농어촌공사라든지 경기도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협의를 해야지 나와서 저것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안 따라주면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제안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그것을 권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큰 쪽으로 넘기고, 유역수자원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기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사회자**

○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저희가 지금 수원 원천리천 같은 경우에도 저수지의 수문을 따라가서 수위를 조정하는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도...

□ **사회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나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 **사회자**

○ 예, 직접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예, 굳이 안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는 해서.

□ **사회자**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에 상위 유역계획이 선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데 상위 유역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

- 그러니까 이번에 검토할 때 증고하거나 아니면 저수지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번 계획에서는 어디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방향성은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서에 담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라 그것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방향성은 제시하되 현실적인 부분이 이런 점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아니면 협의가 그 와중에라도 도가 중재를 하셔서 되면 그 부분을 넣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사회자**

- 예, 최종 정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조건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들어오라고 하시죠.

( 관계자 입장 )

- 한강 지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안)에 대해서 경기도 수자원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관계자 퇴장 )

- 다음은 세 번째 안건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 입장 )

-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 제3안 :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15:13 】

#### □ 제3안건설명자A

- 안녕하세요. 파주시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장 김정은입니다.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번지의 폐천부지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문천 우안에 위치한 폐천부지는 기설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아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도 확보하여 치수적 안정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환경부가 조사한 홍수량 산정 보고서와 금회 분석한 홍수량이 하천기본계획에 비해 계획홍수량이 줄어들어 치수안정성은 더욱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재 제방 기능을 수행 중인 도로가 독마루폭의 5m를 제외하여도 폭을 22m 이상 확보하고 있어 제방과 치수 구조적 안정성은 충분하며 내수위험지구 해소를 위하여 펌프장을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개발예정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난 발생의 우려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KCI 이흥기 부사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제3안건설명자B

-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 첫 번째, 개요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폐천부지 전체 면적 9,299㎡ 중에서 폐천부지로 설정된 3,466㎡에 대해서 중첩되어 있는 이 부분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폐천부지를 용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검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지금 오른쪽이 35-8번지이고 현재도 거기에 문산보건지소와 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하천이 문산천이고요. 동문천은 문산천에 바로 합류하는 곳인데 현재 검토 대상 위치가 문산천과 합류하는 곳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하구 지점부터 약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예를 들어서 동문천의 홍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제방을 쌓게 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은 빨간색 선의 형태가 될 터인데 독마루 폭 5m가 이미 조성돼서 산책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4차로 22m가 넘는 도로가 있어서 제방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또 기타 치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동문천교에서 상류 측으로 바라본 전경이고 보시는 사진의 왼쪽에 아파트 아래쪽으로 보건지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 옆에 봉서01배수통관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봉서01배수통관은 안쪽에 간이펌프장과 연계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관련 계획 조사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이 가장 최근 2015년에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동문천은 1995년, 2003년, 2015년에 각각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사진은 동문천의 유역, 문산천에 대한 유역하고 그중에 동문천을 보시고 계시고요. 오른쪽 사진은 하천 모식도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산천과 동문천이 합류되는 곳에 문산보건설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상으로 보면 문산천 합류점부터 상류 100m, 200m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계획홍수위 대비 1.6m 이상의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0+ 100, 0+ 200 지점의 하천 횡단면도와 홍수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 하천기본계획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선이 하천구역선입니다. 하천구역이고 회색으로 음영된 곳이 도로가 되겠고요. 도로 안쪽으로 35-8번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하천구역선 바깥쪽에 도로가 있고 도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을 보면 해당되는 구역에 별도의 제방계획이라든가 보축계획 등 치수적인 계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문천 전체에 대해서 축제 7.8km 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문산천 합류점인 축점 0번부터 0+ 200까지 해당되는 구간에서는 치수적인 별도의 계획이 없음을 하천기본계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파주시에서 2020년 3월에 수립한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있는데 해당되는 계획을 찾아보니까 문산5리지구라고 해서 문산보건설소 및 노인복지관 설치 지점에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을 현재 분당 45톤을 배제하는 것을 분당 75톤 배제하도록 증설하는 계획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수 침수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다음은 폐천부지 현황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보존이나 처분이나 각각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폐천부지 유형별 관리계획이 보전과 처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이 지점은 A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제방 제내지로 추후 치수 및 하천환경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해서 보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E에 해당되는 부분,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부

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금회 검토의 주요 목적입니다.

- 폐천부지 유형별 관리계획 전체를 봤더니 동문천에서는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전체를 다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금회 검토 대상인 35-8번지도 보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9,299㎡ 중에서 3,466㎡를 폐천부지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천구역과 인접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부터 포함해서 안쪽으로 제내지까지 넓게 폐천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곳,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곳, 그곳이 금회 폐천을 시키려고 하는 35-8번지가 되겠고 전체가 한 필지입니다. 그중에서 3,466㎡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을 폐천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필지 안에서 폐천이 분할돼 있는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간에 여러 필지들이 분할되고 합병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렇게 약간 모양이 특이한 형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앞서 설명드렸던 주변 현황이 되겠는데 이미 인근에 주거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 봉서01배수통관이 있는데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지금 이것을 확장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달에 파주시에 있었던 집중호우 때 이 일대에서 별도의 침수가 없어서 우수관로에 적절하게 우수가 배제되고 있고 또 펌프장이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저희들은 현장조사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파주시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왼쪽 도면에서 위쪽이 동문천이 되겠고요. 아래쪽이 제내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현재도 문산보건지소와 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금회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공간 지구별 관리계획을 봤더니 동문천은 측점 0번부터 0+ 447번까지 복원 및 친수지구로 설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다른 대책은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폐천부지 이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폐천부지가 이렇게 한 필지 안에서 2개로 폐천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이유가 최초에 1983년도 4월에 35-3번지에서 35-8이 분할됐습니다. 그리고 '89년 5월 달에 천에서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89년 9월 달에 소유권이 경기도에서 파주시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지목이 또 답에서 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된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90년도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89년도 건설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91년도에 최종 건설이 끝나고 개소했을 때 그때 지목이 대로 변경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4월 달에 수립된 동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그때 당시 도면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곳이 폐천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2003년도 임진강 수계(2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아까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35-10, 35-16번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천부지로 이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35-10하고 35-16이 35-8번지와 병합이 되면서 2016년도에 수립된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동일한 필지에서 3분의 1 정도는 폐천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폐천부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다음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천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방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기존 독마루 5m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4차로 도로, 22m 이상의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방으로써의 구조적인 안전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별도의 파이핑이라든가 제방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그런 특이한 사항들은 그동안에 발견할 수가 없어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치수적으로도 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 하천기본계획과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그리고 금회 2023년도 강우까지 대입을 해서 금회 홍수량을 한번 따져봤더니 과업 정점인 동문천 하구 지점에서 하천기본계획은 기본 홍수량이 530톤,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은 420톤, 금회는 411톤, 그래서 각각 119톤의 홍수량이 오히려 저감이 되어서 이후 치수적인 안정성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내수위험지구인 문산5리지구의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펌프장이 있는데 이 펌프장을 향후에 증축했을 때 필요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

도록 35-8번지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 필지는 일단 지금 별도의 건축계획이 없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실 여기가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단은 당분간 이곳을 장애인주차장과 같은 시설로 비포장 상태의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펌프장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그 계획과 병행해서 이곳에 별도의 시설물을 확정하려고 과주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금회 검토 구간인 지방하천 동문천의 문산천 국가하천 합류점부터 시작해서 No.0+200까지 해당되는 하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안인 곳인데요. 이곳은 복원 및 친수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하천기본계획, 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해 봤을 때 축제와 보축 등의 별도의 치수대책은 없지만 내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폐천부지 현황은 현재 보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주시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부지가 필요하고 치수 및 하천환경 또는 기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계획에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치수 안전도 측면에서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홍수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과거에 비해서 새로 개정된 홍수량 산정 지침에 의해서 검토해 봤을 때 홍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부지와 중첩이 되는 폐천부지 35-8번지 3,466㎡의 토지는 폐천부지 유형별 관리계획의 제내지 또는 계획하폭 외측에 위치한 토지로 간주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처분하는 것이 토지의 현재 이용 실태와 장래 이용계획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여기까지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부위원장

- 이흥기 부사장님, 사전검토의견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제3안건설명자B

-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이 ○○○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자

-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건에 대한 경기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해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상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천법」 제84조에는 폐천부지 활용의 치수목적 및 하천환경 목적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부로 되어 있는 표에 대한 구분은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2012년도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법에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타 활용목적에 공공시설의 이용의 경우는 저희가 폐천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부터 허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경우는 상정 안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 경기도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현 위원님.

□ ○○○

- 김이현입니다. 결론 부분, 28쪽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는 펌프장이 없죠?

□ 제3안건설명자B

- 현재 있습니다.

□ ○○○

- 분당 45톤짜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 제3안건설명자B

- 예, 지금 분당 45톤짜리가 운영 중이고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그것을 75톤으로 확장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

- 만약에 폐천부지를 우수지로 사용한다 그러면 증설 필요한가요? 우수지의 규모하고 펌프장의 동력 크기는 서로 반비례해요.

□ 제3안건설명자B

- 예, 맞습니다.

□ ○○○

- 그러니까 45톤을 그대로 두고 폐천부지를 그대로 우수지로 썼을 때 증설이 필요하냐고요.

□ 제3안건설명자B

- 그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증설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그곳을 비워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활용을 하는데 지하공간은 필요하다면 우수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장래에 파주시에서 최종적인 (안)을 결정할 때 다양하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

-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것도 그거예요. 좋아요. 위에 저런 시설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우수지로 활용하라 이거죠. 그러면 펌프 증설 안 해도 돼요. 상부에는 그 시설 그대로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수원 평동 배수처리시설을 해서 위에 하부는 우수지로 쓰고요. 상부는 공원화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폐천을 자꾸, 자꾸 처분하려고 하는데 왜 원래 하천부지였던 것을 자꾸 다른 용도로 쓰려고 방향을 그렇게 트느냐 이거죠.

□ 제3안건설명자B

- 그것은 나중에 저 부지를 전체 다 유수지로 썼을 때 펌프장을 얼마큼 증설해야 되느냐 그것은 더 자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짧은 소견으로는 45톤에서 75톤으로 거의 1.8배 정도 펌프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입장으로 봐서 저것을 전체 다 유수지로 쓰더라도 일부는 펌프장의 증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 공간을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한 필지라서 한꺼번에 폐천을 처분하는 그런 계획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 ○○○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하천으로써의 기능은 충분히 상실된 것 같고요. 또 공공목적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폐천해서 파주시에서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이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펌프장 증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검토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없으면 관계자분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 퇴장 )

- 펌프장, 장래계획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 ○○○

○ 그냥 원안 하죠.

□ **부위원장**

○ 원안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뽕프장 지하 유수지 그것까지 우리가 폐천하는 데 하기에는 좀, 그냥 원안으로...

□ ○○○

○ 위원장님, 혹시 이것 폐천하지 않고 파주시에서 그대로 이행하면 문제 있습니까?

□ ○○○

○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하천부지에 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라.

□ ○○○

○ 지금 공공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 **부위원장**

○ 지금 있습니다. 새로 짓겠다는 거죠.

□ ○○○

○ 새로 지을 때가 불법입니까?

□ **부위원장**

○ 예. 폐천시키고 나서. 일단은 처분으로.

□ ○○○

○ 그런데 저는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 어떤 조건?

□ ○○○

- 저희가 아무리 공공이용으로 해서 그렇게 써도 좋다고 한 것은 제한적인 거죠. 아예 내놓고 폐천하면서 공공시설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것을 파주시에 경기도가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 왜냐하면 이게 '90년대나 2000년까지는 이런 일이 시에서 많이 반복됐지만 요즘 경기도 내 시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있는 것도 정리를 해서 하천구역에 넣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주의를 하고 그런 일은 다시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는 도가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부위원장

- 안 할 수 있는...

□ ○○○

- 안 할 수 있다기보다는 폐천을 경기도가 준 땅에 대해서 파주시가 내 마음대로 폐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부지 계획을 쉽게 넣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도록, 원래 처분의 조건은 굉장히 제한적임을 명시해서 저는 조건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 그런데 일단은 폐천의 처분 조건의 결정권한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 ○○○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 ○○○

-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해야죠.

□ 부위원장

- 그것은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 가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 관계자 입장 )

- 동문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견이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파주시에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말씀하시죠.

□ ○○○

- 저희가 폐천부지를 공공시설을 짓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이유에서예요. 부지가 없어서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파주시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은 하지만 앞으로 파주시에 있는 어떤 하천에 있는 폐천구역도 공공소유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폐천부지는 환경이나 치수 목적으로 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 파주시는 ○○○님 말씀을 명심하고 폐천부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관계자 퇴장 )

( 관계자 입장 )

-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안 :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15:38 】**

**□ 제4안건설명자A**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입니다.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번 변경 구간은 곤지암천 총 연장 24.4km 중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인접한 1.04km 구간으로 2018년 5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광주시에서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는 의견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 2011년도 기본계획상 본 구간은 축제 및 일부 보축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협의 시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후 7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치수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고, 동년 11월 곤지암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4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시 기본계획을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검토 의견으로 조건부 심의되어 2022년 6월 사업부지 내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거 곤지암

천 개수공사 사업 추진 시 우안에 인접한 곤지암 역세권 내 도시계획도로를 제내지 방향으로 이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곤지암천 개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경강선 철도 교각시설과의 저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장 실정에 맞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번 변경(안)은 2023년에 개정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홍수량 산정 표준 지침을 적용하여 계획홍수량을 재산정하였고,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 인허가 등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곤지암천 개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하천의 치수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수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님께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제4안건설명자B

-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먼저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업 명칭은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 과업의 목적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업의 범위는 곤지암천이 전체 24.4km 중에 곤지암역 부근의 곤지암읍 곤지암리 예계교에서 곤지암2교까지 약 1km 구간이 저희 과업 대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 기본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곤지암 하천기본계획이 2022년도에 동 구간 1km에 대해서 수립이 되었는데요. 거기 통수

단면이 부족해서 우안으로 당초 지정되어 있는 하천구역을 기준으로 확폭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사업을 추진했을 때 역세권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증고하고 또 바깥쪽인 제내지 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경강선 철도에서 약 4.75m 이격이 되고 또 높이로는 3.4m 정도 이격되는 공간이 너무 작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강선 철도시설공단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바, 실제 도로를 이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경강선 철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중첩이 돼서, 용지가 중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도로의 인접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로 제방법선 그다음에 하류부는 확폭이 가능한 구간은 일부 확폭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손실된 신대보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것이 개수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22년도 개수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안 축제1지구에 대한 선형계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빨강색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금회 변경코자 하는 제방법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좌안 보축지구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안은 일부 현 제방선을 기준으로 기본계획 대비 약간 축소하는 게 되고 좌안은 기존 하천구역이 주차장 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또 일부 확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것이 '22년도 단면 계획하고요, 금회 개수계획하고자 하는 단면계획이 되겠는데요. '22년도에 했을 때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제방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현재 법선이 제내지 축으로도 확폭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제방이 올라가고 해서 간섭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게 되었고요. 저희들은 '24년도 금회 계획은 일부 가능한 구간까지 확폭을 하고 거기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22년도에도 홍수방어벽이 제방계획이 아닌 곳은 한 1.8m까지 파라펫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1m 이내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좌안 주차장 부지인데요. 주차장 부지는 일부 더 확장을 해서, 확폭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유역에 대한 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홍수위 분석은 '22년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역의 하천이나 수계나 그다음에 평면적 특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역의 평균고도는 노곡천 합류 전을 기준으로 222m가 되겠고요. 평균경사는 20% 이내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 분야는 넘어가지죠.

□ 제4안건설명자B

- 예. 토지이용상 현황, 기상관측에 대한 내용, 다음은 종합분석이 되겠는데요. 강우분석은 지침대로 했을 때 당초 대비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홍수량은 공수량은 Clark 유역추적법으로 했을 때 노곡천 합류 전에는 저희들이 계획빈도가 100년인데요. 100년 빈도를 했을 때 일부 소량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촌천 합류 후에는 일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서 저희 계획홍수량이나 개수계획을 전제로 늘어난 1,123m<sup>3</sup>/s를 적용하였습니다.
- 홍수량 산정방법에 대한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홍수량하고 기점홍수위는 곤지암2교 하류의 상위 계획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조도계수, 계획하폭은 저희들이 금회 개수계획을 하면서 일부 확장이 돼서 당초 대비 10~20m 가까이 확장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위는 '22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약 80cm 정도가 낮아지고요. 최고로 89cm, 90cm 가까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관리계획, 정비계획은 하천 시설물계획이 우안 축제, 좌안 보축 그다음에 배수 구조물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통관 3개, 암거 1개소, 보 1개소는 철거하고 1개소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교량은 기준에 미흡하여서 3개 교량에 대해서 재설치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 호안은 환경사 호안과 파라펫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단면도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것이 전체적인 평면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효과 분석 그다음에 시설물 총괄 계획, 이하 생략을 하고요.
- 그다음에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부위원장

- 그것은 됐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경기도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자

- 광주시에서 제안한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건에 대한 경기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심의하게 된 히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이 세 번째 심의입니다. 2020년도에 광주시에서 오른쪽에 도시계획도로 옆에 큰 공터가 보이는 쪽이 곤지암역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안에 폐천부지가 있었거든요. 폐천부지가 크게 있었는데 그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2020년도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죠. 너네가 연결된 곤지암천 정비계획을 다 가져와야만 처분해 주겠다고 다시 재심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서 2022년도에 변경계획을 다시 올렸는데 그 당시에 변경계획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도 계획으로 심의를 할 때 조

건부 의견을 줬었는데 그 당시에 조건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빈도를 80년에서 100년으로 올려라, 여러 가지 치수적인 보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할 때 광주시에서 철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행정처분에만 급급해서 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나중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들어갔더니 실현할 수 없는 계획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재상정이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발표자료 6페이지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상에 안전관리 부분들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제4안건설명자B

○ 자전거도로가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좌안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안은 기존 도로 옆에 보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좌안 쪽에 하류부터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계획이 있었는데 금회 계획은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제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확장되는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길을 상류 쪽으로 연결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 부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그런데 이번에 제시하신 계획은 이게 최선의 안인지 저희가 알 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에도 이런 검토를 저희가 하고 다시 재상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1안, 2안 최소한 2개 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최적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1안인 거죠. 1안이 최적(안)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없어요?

□ 제4안건설명자B

-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형 변경을 양안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대보가 있습니다. 신대보가 기존에 1m 이상 1.5m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그것이 이쪽에 다 도시화가 돼서 치수기능이 없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일부 제방 정비에 따라서 하상이 일부 50cm 정도 정리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대비 80cm 정도의 홍수위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도출해 나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계속 보고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예.

□ 부위원장

-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관계자분은 잠깐 나가계시죠.

( 관계자 퇴장 )

-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업도 사연이 있고 철도청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안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 ○○○

- 지금 ○○○ 말씀하신 것 조건부해서 한번 (안)을 받는...

□ 부위원장

- 그러면 ○○○과 ○○○ 말씀하신 사항을 조건부로?

□ ○○○

○ 예.

□ **부위원장**

○ 그러시죠.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 관계자 입장 )

○ 끈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경기도 수자원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관계자 퇴장 )

( 관계자 입장 )

○ 오늘 마지막 안건인 흑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안 : 흑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

**【 15:55 】**

□ **사회자**

○ 흑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민원 발생 건입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한 날짜와 실제

작업했던 용역을 할 때 측량했던 그 사이 기간에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개발행위를 했는데 현 상황으로 판단해 보니까 현 상황에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담아서 내용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제5안건설명자A

-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보시면 공공측량 저희가 기본계획 당초에 수립할 때 2014년 8~12월까지 측량을 했을 때 당시는 이렇게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9월에 옹벽 설치를 해서 여기를 택지 부지개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한 날짜보다 개발행위된 날짜가 더 전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됐고요.
-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4년 12월쯤에 완료를 했는데 부지 조성이 2015년 6월에 되면서 저희가 고시하는 데까지 기간이 2017년 4월에 고시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지 조성이 완료돼서 이후에 하천구역이 변경된 것을 인지해서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개요는 이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구역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옹벽 발생된 4필지에 대해서 지금 하천구역에서 감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 관련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2003년에 결정했을 때의 하천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적선 경계로 해서 하천구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2017년에 저희가 하천구역을 설정할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홍수위가 닿는 선까지,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 좌안 쪽은 다 임야였기 때문에 무체부로 판단하고 수위까지만 관련해서 수위 선으로 해서 홍수위를 맞춰서 파란색 선으로 하천구역을 변경한 상황인데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발한 구역이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원래는 임야였는데 이게 계단

식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최하단에 있는 옹벽은 약 3.3m 정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 그래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2017년의 하천구역이 지금 민원인이 말씀하신 개발한 구역까지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계획하폭상으로는 민원인 필지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에는 사수역 안에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드리는 홍수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홍수위 자체가 이게 중간에 있는 기본계획 전체에는 들어가지는 않다 보니까 안 들어간 하지만 이것을 추가해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수위상으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안)은 기존에는 저 점선으로 돼 있는 구간으로 해서 안쪽으로 하천구역이 포함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유지 옹벽이 있는 구간을 조금 제외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유수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주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김이현 위원님 같은 경우도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제외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포함해서 하천구역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녹색선이 지금 제가 임의로 그어놓은 것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수리 검토했을 때 수리 검토 범위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는 사수역이라고 보고 이게 다 무제부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하천구역 계획하폭 바깥에가 지금 여기 보시는 18+325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획하폭으로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계획하폭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녹색 선에 맞춰서 저희가 유로로 판단해서 홍수위를 검토하고 그 밑에, 옆 밖에 있는 구간 같은 경우 지금 민원인이 있는 필지 같은 경우는 사수역으로 봐서 그쪽은 홍수의 영향이 없는 구간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필지를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한 홍수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수위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결국은 흑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에 측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상 토지 일부를 임야를 택지로 바꿔서 인허가가 나서 공사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는 그 뒤에 벌어진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는 그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인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류할 수 없습니까? 고시 완료까지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부위원장

-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시·군에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권한이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

- 그런데 이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니까 서둘러서 막말로 잡아먹을 때는 미리미리 하세요라고 정보를 알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접근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부위원장

- 예, 보안사항이라든지 시·군 협조사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그보다는 원래 저기가 흑천이잖아요. 흑천 옆에는 수변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수변구역에서 아마 인허가를 낼 때 유역청에서 저런 사항을 점검했었어야 돼요, 원래. 하천구역의 경계선하고 수변구역선이 어디고 그 경계선 안에서 저런 시설의 개발을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것을 사실 청에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에서 검토를 안 한 거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인허가를 줬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인허가가 이미 나 있던 필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검토를 사실은 도는 어떤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청에 특정 필지, 하천에 인접한 수변구역 내 필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검토 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환경부가 저런 땅을 돈을 주고 다 사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는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지방하천에 인접한 수변지역의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봐야지 그냥 평가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행정조치에 대한 건의는 할 수 있겠죠.

#### □ 사회자

-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에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 ○○○

- 원래 지방하천은 양안 500m까지 수변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지역에 대해서 제외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는 모르지만 유역청은 안다는 거죠. 이 필지나 이 지역이 수변구역인지 아닌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원래 자기들의 임무거든요.

#### □ 사회자

- 저도 허가가 나간다 그러면 허가도 관련법의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 따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한번 프로세스를 공부해 보고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입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 ○○○

- 그러니까 이게 도의 문제가 아니고 청에서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량해서 영향평가를 할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천계획의 저촉여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총량하고 수변구역하고 부하량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

경을 써 달라고, 이제 환경부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것을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자기가 다 그것을 하니까.

□ **사회자**

○ 예. 제가 공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 **부위원장**

○ 한번 잘 살펴보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만들어 보시죠.

○ ○○○

□ ○○○

○ 저 그림 있으니까. 지금 연두색 저기까지가 수위 선이라고 해서 분석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바깥쪽은 사수역이다. 당연히 저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흑천의 수위가 증가할 리는 없어요. 만약에 저것을 빨간색 선을 허용해 준다면 2017년, 저 구역에 2017년 선이 필요 없다 이거죠. 2003년 구역선 그대로 좌우편도 다 가치가, 그러면 좌우편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은 나중에 저 사실을 알고 제2차 민원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제5안건설명자A**

○ 지금은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구역 안에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게 기간이 하천구역 지정 전에 기 수립 하천구역을 기준으로 개발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불가피하게 이 필지는 이렇게 빠지게 되지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게 쌓였으니까 이것 말씀하신 대로 개수계획을 쌓는 게 맞기는 맞는데 뒤에가 다 임야다 보니까 굳이 개수계획을 쌓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임야로.

□ ○○○

○ 저기서 옹벽설치 선이 어디예요?

□ **제5안건설명자A**

- 지금은 딱 저 빨간색 선 라인으로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딱 맞춰서 옹벽을 세워놨습니다.

□ ○○○

-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위원회에서 뭔가 판단하기가 약간 애매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자원위원회 개최 결과물으로써 저런 유사사례가 있었는지랑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현황들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 사회자

- 유사사례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민원인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관리청이 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시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고시 당시의 현황이 틀렸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관계자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 퇴장 )

- 흑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안)은 원안 의결로 가는 것으로 하고 ○○○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경기도가 유념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관계자 입장 )

-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관계자 퇴장 )

-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해주셨고 모두 심의가 끝났습니다.
-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 폐회 16:11 】

===== 끝 =====